

- 2025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-

국내 홈쇼핑/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참여 업체 2차 모집 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道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의 유통 판로개척 및 내수 판매증진을 위하여 「2025년 마케팅 지원사업-국내 홈쇼핑/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」 사업에 참여하실 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08월 04일

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

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마케팅 지원사업-국내 홈쇼핑/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
- 공고기간 : 2025. 08. 05.(화) ~ 08. 14.(목), 17:00 한 (10일)
- 사업목적 : 道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
- 지원대상 :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(공고일 현재 기준)
 - 지원가능 제품 : 하단 '표' 참조
 - ※ 홈쇼핑/라이브커머스 방송 특성상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적정재고 보유필수
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 홈쇼핑/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
- 지원규모 : 중소기업 00개사 내외
- 지원기간 : 협약일로부터 2025. 12. 31까지 ※ 유통사 ↔ 선정사 공급계약
- 지원분야 : 전 분야(공산품, 가공식품 등)

가능 제품	제외 제품
·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(기획/제조) 제품 ·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 등에서 생산한 제품 ·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 생산(OEM)한 제품 ·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(OEM)한 제품 ·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(콜라보레이션)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·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·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 (도의 재배: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) ·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(OEM)한 제품	· 성인용품, 주류, 의약품, 기업형 의료기기, 산업재, 원부자재류, 부품, 소프트웨어 등 홈쇼핑/라이브커머스 채널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 ·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보호, 상표,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· 다른제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·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·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·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 하는 제품 · 시연이 불가능한 제품(고객의 관심 및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) · 제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, 입증할 수 없는 제품

□ 세부 지원내용

- 홈쇼핑/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: 선정사 입점코드를 활용한 입점/방송 진행
 - 홈쇼핑방송 : 선정사 자부담금 300만원 제외 방송비 지원(부가세 포함)
 - 라이브커머스 : 선정사 자부담금 없음, 방송비 지원(부가세 포함)
- 홈쇼핑 채널 및 라이브 채널에 중복 선정 되지 않음
- ※ 전문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기업 및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정/매칭되며, 선정 이후 유통채널사의 방송진행 관련 요구 조건 및 서류 충족 시 입점 및 방송 가능함
- ※ 선정사 확정(유통채널 확정) 후 경기도주식회사 또는 유통채널사의 상황에 따라 방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사업 진행절차



□ 심사 절차 및 내용

- (1차) 서류심사 / (2차) 샘플, 제품소개서 활용 전문심사를 통한 정성/정량적 평가
 - ※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/제품이라도 유통채널사의 입점 조건 및 품질관리(QA)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, 방송 진행이 불가 할 수 있음
 - 범위반사실 포함 심사위원 합계 평균 평가점수 7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

○ 심사위원회 평가항목

평가항목	세 부 항 목
지원 필요성(10)	· 판로지원의 필요성, 시급성 및 사업 참여의지
제품 경쟁력(30)	· 기업 제품의 홈쇼핑/라이브커머스 시장 경쟁력 여부 · 평균적으로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인지의 여부 · 경쟁제품 대비 비교기술, 성능, 디자인, 가격 우위 여부
제품 신뢰성(30)	·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·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 · 제품 신뢰성에 따른 방송 적합 여부
구체적 사업화(20)	· 신청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할 기술역량, 생산역량 등 인적/물적 사업화 기반 구축 여부
기대효과(10)	· 지원을 통한 발전가능성, 매출 증대 가능성
가산점 (각2점/최대6점)	· 여성기업, 사회적경제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장애인기업, 중증장애인기업, 자활기업 등 · 착한기업인증기업, 경기가족친화기업, 경기임팩트유니콘 기업, 주4.5일제 도입기업

□ 참여신청

○ 신청기간 : 2025. 08. 05.(화) ~ 08. 14.(목) 17:00 한 (10일)

※ 샘플(제품) 마감 : 2025. 08. 20.(수) 17:00 한

○ 심사위원회 : 2025. 08. 21.(목) ※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
○ 심사결과 발표 :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게시/선정업체 개별 통보

○ 신청방법

①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(www.kgcbrand.com)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국내 홈쇼핑/라이브커머스방송 지원사업 2차 공고 게시글 ‘신청하기’ 클릭 ③ 사업참여 동의 및 범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약약 동의 ④ 신청정보 입력 및 자료 업로드 : 업체 정보 및 필수/선택 제출 자료 ⑤ 공급 제품 정보 입력 후 ‘최종 신청 완료’ 클릭 ※ 제품사진, 제품설명, 판매가 반드시 입력	
필수제출 서류	• 신청화면 내 *필수항목 작성 및 해당되는 항목 모두 반드시 파일 업로드 • (첨부파일 다운로드)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¹⁾ 1부. • 국세²⁾ 및 지방세³⁾ 완납 증명서 각 1부. ※ 유효기간 신청시작일 이후 ※ 1), 2), 3)서류는 회사소개서와 함께 압축 후 ‘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’에 업로드
제품샘플	• 대표 제품 샘플 1식 (심사위원회 제출용으로 선정 후 방송사업시 동일 제품으로 진행) - ‘25.08.20.(수)까지 도착 / 샘플 미도착시 심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음
샘플발송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, 2동 7층 경기도주식회사 양영진 대리

□ 문의처

- ◇ 담당자 :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양영진 대리, 구지원 주임
- Tel : 031-5171-5327, 031-5171-5334
- E-mail : yj3356@kgcbrand.com, kkmou0504@kgcbrand.com
※ 유선 상담 등으로 인해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**가급적 메일 활용 문의**하시면
순차적으로 답변 예정입니다.
- ◇ 최종 발표는 심사위원회 진행 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 통보 예정
※ 결과발표 전까지 접수 중으로 확인 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○ 참여제한 기업 및 제품

- ① 공정·노동·환경·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
 - 법위반 조회기간 : 지원사업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 적용
 - 법위반 사실 확인 : 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내역 확인을 위해 처분기관에서 발급한
확인서 제출 ※ 참고 확인
- ②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
- ③ 최근 2년간(2023, 2024년) 본 사업에 선정된 동일한 제품 또는 정부, 타 지자체
및 공공기관 유사사업에서 지원받은 제품
- ④ 성인용품, 주류, 산업재, 원부자재류 등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
- ⑤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제품
- ⑥ 제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, 입증할 수 없는 제품
- ⑦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, 제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제품

- 위 참여 제한 기업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
내용 중 허위기재, 증빙 불가, 결격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관련
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

붙임 : 개인정보 수집 활용 이용 제공동의서 1부. 끝.

[참고] 법 위반기업 사실 확인

적용법률		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
I 공정	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	(소관기관) 공정거래위원회 (서류제출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법위반조회발급 (조회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의결 조회 법위반사실 조회 (방법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https://ftc.go.kr/) →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→ 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
II 노동	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	(소관기관) 고용노동부,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지청 (서류제출) 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 법위반사실 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(조회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체불사업주명단* 공개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(공문서) (방법) 신청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법위반사실확인서 정보공개 요청 *공개기준일(매년 8월 31일)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
III 환경	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	(소관기관) 기업소재 관할 시군 (서류제출)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 사실확인서 등 정보공개 등 신청 발급 (조회)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(공문서) (방법) 신청기업 소재지 소관 부서 또는 환경 관련 부서에 정보공개 요청
IV 납세	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	(소관기관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 (서류제출)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 (방법) 오프라인 : 세무서, 시군 세정과 방문 및 완납증명서 신청 온라인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 → 납세증명(국세), 지방세 납세증명(지방세)

※ 관련 근거 : 「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 및 관련 고시